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77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4.26. 제정, '23.4.2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라. 지도 및 점검·환수·포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 등 관내 방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2016. 1. 5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 및 방법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2. 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¹⁾ 및 제3조 제2항²⁾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1)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는 경비 지원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바, 안 제7조에서 지원금 정산서 및 방법활동 순찰일지를 순찰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제출 서류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이 확인하여 부적절한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서 역할을 구분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전·후 현황 1부. 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8조(복장·장비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감독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를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848호, 2022. 4. 26.>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

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변동사항**

○ 경찰서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업무 이관

법률 제정 전	법률 제정 후
· 설립신고(자율방범대 → 구)	· 설립신고 및 대원 위촉신고(자율방범대 → 경찰서)
· 설립신고증 교부(구 → 자율방범대)	· 설립신고증 교부 및 대원 위촉(경찰서 → 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4조(신고) ·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근거

○ 자율방범대 명칭 통일(행정동 단위)

- 전 방법을 행정동 단위로 구성하고 명칭도 ‘OO동 자율방범대’ 로 구성

예) 가산한민족자율방범대 → 가산동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근거

□ **조직현황(법률 제정 전 · 후)**

연번	행정동	법률 제정 전('23. 3.)			법률 제정 후('23. 12.)		
		방법대	대원수	비고	방법대	대원수	비고
1	전 동	자율방범연합대	49명		자율방범연합대	32명	23. 9. 신규위촉
2	가산동	가산한민족자율방범대	27명		가산동 자율방범대	27명	
3	독산1동	독산1동자율방범대	22명		독산1동자율방범대	23명	
4		다문화자율방범대	15명		-	-	
5	독산2동	독산2동자율방범대	17명		독산2동자율방범대	16명	
6	독산3동	독산3-1동자율방범대	25명		독산3-1동자율방범대	23명	
7		독산3-2동자율방범대	15명		독산3-2동자율방범대	13명	
8		문성한민족자율방범대	14명		독산3-3동자율방범대	14명	
9	독산4동	-	-		독산4동자율방범대	8명	23. 11. 신규위촉
10	시흥1동	시흥1동자율방범대	24명		시흥1동자율방범대	22명	23. 9. 신규위촉
11		다사랑자율방범대	40명		시흥1-1동자율방범대	17명	
12	시흥2동	시흥2동자율방범대	17명		시흥2동자율방범대	16명	
13	시흥3동	시흥3동자율방범대	19명		시흥3동자율방범대	17명	
14	시흥4동	시흥4동자율방범대	16명		시흥4동자율방범대	18명	
15	시흥5동	시흥5동자율방범대	27명		시흥5동자율방범대	22명	
16		백산한민족자율방범대	31명		시흥5-1동자율방범대	11명	
총 계		15개대	358명		15개대	247명	

※ 지원금 : 1개대당 월 25만원(법률 제정 전 · 후 동일)